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한중 간에 관할권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어도’ 문제는 유전 등 해저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은 동중국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경계확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지닌 복합적 문제라 하겠다.

한국은 해양경계 확정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육지영토가 자연 연장된 대륙붕상에 위치해 있어, 중국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판례는 자연 연장 원칙이 주목받지 못하고, 잠정 중간선을 확정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통합돼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역사·설화·민요 등을 포함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의 통섭을 통한 포괄적인 이어도 인식의 제고가 요청된다. 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이용이 확대돼, 여기서 생산되는 관측 자료들이 한·중·일 간의 국제적 공유 및 활용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한중 양국은 이어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극심한 갈등과 분쟁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사법적 해결방안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 JPI 정책포럼 세미나(2012.3.27) 발표자료임.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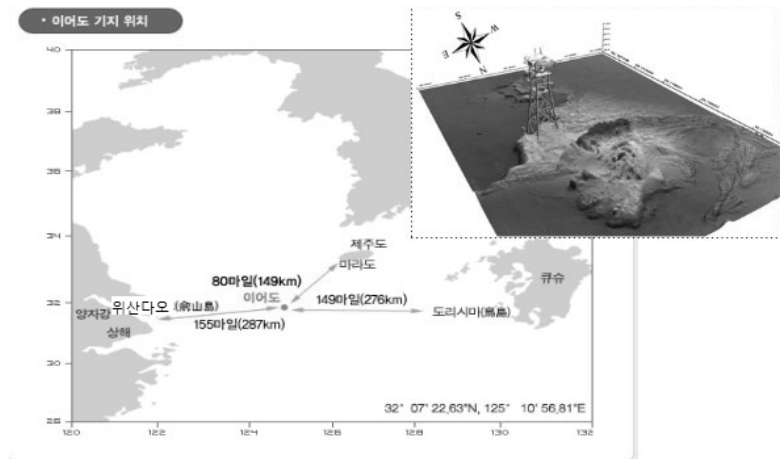
1. 이어도의 현황
 - 가.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 및 명명
 - 나.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
 - 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근거
2. 이어도 문제의 발생 배경 및 파장
 - 가. 이어도 문제의 발생 배경
 - 나. 이어도 문제의 경과 및 파장
3. 이어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가. 한중 양국의 기본 입장
 - 나. 국제법적 쟁점
 - 다. 국제 판례의 추세
4. 이어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 가. 역사적·실화적 통합 인식의 제고
 - 나.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이용 확대
 - 다. 외교적·사법적 해결 방안의 모색

1. 이어도의 현황

가.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 및 명명

- 최근 중국이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의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한중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어도’는 동중국해와 서해의 남단이 교차하는 북위 32도 07분 32초, 동경 125도 10분 58초에 위치함.
 - 한국의 최남단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80해리(1해리=1.852km), 즉 149km 떨어진 해역에 자리 잡은 이어도는 동서 1.4km, 남북 1.8km에 이르는 타원형의 수중 암초임. 주변 해역의 평균수심은 50m이지만 이어도의 정상은 해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에 잠겨 있어 파도가 심할 때면 해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냄.
 - 아래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이어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중국의 위산다오(余山島), 일본의 도리시마(鳥島)까지는 각각 155해리(287km), 149해리(276km)나 돼 마라도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음.

<그림 1>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



- 중국의 경우 1996년 이어도로부터 133해리(247km) 떨어진 현초(顯礁: 물위로 드러난 바위)인 통다오(童島)를 EEZ(배타적 경제수역)¹⁾ 기점으로 발표하여 한국의 항의를 받음. 그 후 중국은 한국의 마라도와 비슷한 규모의 유인도인 위산다오로 EEZ 기점을 변경함. 통다

오에서 중국 본토 쪽으로 22해리 후퇴한 위산다오로 기점이 옮겨지면서 이어도로부터 그만큼 더 떨어진 셈임.

- 1900년 일본 큐슈에서 중국 상하이(上海)로 항해하다 이 수중 암초에 부딪친 영국 상선 ‘소코트라(Socotra)’호의 이름을 따서 국제해도에는 이어도를 ‘Socotra Rock(소코트라礁)’으로 표기함.
- 1951년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함정을 동원해 제주도민 사이에 전설로 내려오던 이어도를 탐사한 끝에 찾아내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가라앉힘.²⁾ 그 후 1984년 KBS와 제주대학교가 이어도 탐사에 나서 이 수중 암초를 재확인하고 ‘파랑도’라 명명함. 1987년에는 당시 해운항만청이 이어도에 등부표를 설치해 그 존재를 국제적으로 공표한 바 있음. 국립지리원은 2001년에 이 수중 암초의 공식명칭을 「이어도(Ieo Do)」라 부르기로 최종 확정함.

나.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

- 1982년에 채택돼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섬(island)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을 말함.
-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이처럼 밀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간의 거주(human habitation) 또는 독자적인 경제활동(economic life of their own)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³⁾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암석과 섬을 구별하고 있음. 섬이 EEZ와 대륙붕을 가지는 반면에 암석의 경우는 단지 12해리의 영해와 24해리의 접속수역만 설정할 수 있음.
- 여기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지만, 식수·식량 등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원의 획득 가능성을 오로지 그 곳의 자연적인 조건만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 유력함(김부찬, 2007; 박찬호, 2011).
- 이어도는 수중 암초일 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인 ‘섬’이 아니기 때문에 EEZ와 대륙붕을 갖지 못함. 또 이어도는 밀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암석’이 아니기 때문에 12해리 영해나 24해리 접속수

**한국의 최남단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80해리
(1해리=1.852km),
즉 149km 떨어진 해역에
자리 잡은 이어도는 동서
1.4km, 남북 1.8km에
이르는 타원형의 수중
암초... 이어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중국의
위산다오(余山島),
일본의
도리시마(鳥島)까지는
각각 155해리(287km),
149해리(276km)나 돼
마라도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

이어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단지 이어도 수역의

관할권을 놓고

한중 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우리 정부는

향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를 획정할 경우

이어도는 한국의

EEZ 내에 속하고,

또 자국의 EEZ에는

그 나라가 인공구조물에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

역도 설정할 수 없음.

- 요컨대, 이어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님. 단지 이어도 수역의 관할권⁴⁾을 놓고 한중 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것임. 이어도에서의 ‘도(島)’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임.

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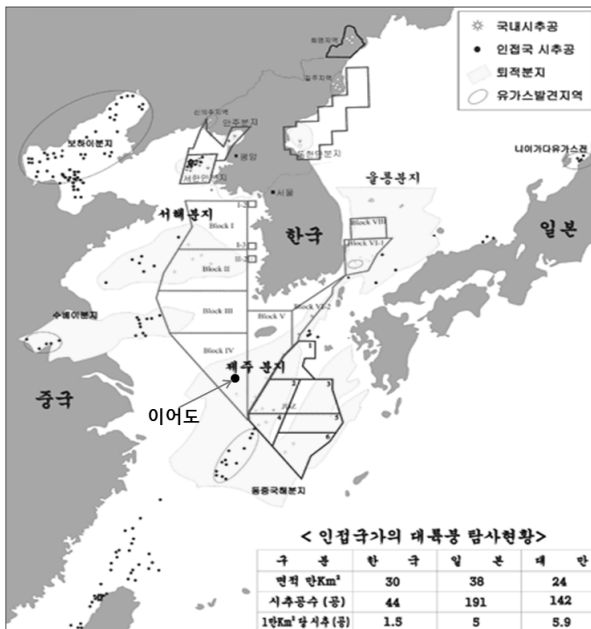
- 우리 정부는 향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를 획정할 경우 이어도는 한국의 EEZ 내에 속하고, 또 자국의 EEZ에는 그 나라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규정(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60조)을 근거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함.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1995년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의 현장조사에서부터 시작해 2003년 6월 11일 준공됨. 2007년 1월부터는 그 관리 운영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이관됨.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수중 암반에 60m의 기둥을 박고, 수면 위로 36m의 플랫폼을 시설함. 헬기장을 갖춘 400평 규모의 이 해양과학기지에는 각종 첨단 관측장비와 감시 카메라를 갖춘. 무궁화위성을 통해 주요 장비가 원격 조작되고 관측 기록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됨.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주변의 풍부한 어족자원과 태풍진로 등 기상에 대한 관측을 상시할 수 있을 뿐더러 매년 근처를 지나는 20만~30만 척의 선박에 위치를 알려주고 비상시 구난기지 역할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해양과학기지라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했어도 수중암초인 이어도가 국제법상 섬이 될 수는 없음.
 -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8항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어도 문제의 발생 배경 및 파장

가. 이어도 문제의 발생 배경

- 이어도 문제는 유전 등 해저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은 대륙붕과 EEZ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1969년 유엔 산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⁹⁾가 “동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천연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에머리 보고서(Emerly Report)’를 발표함(구민교, 2011; 김영구, 1999). 또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북해대륙붕 사건과 관련 “대륙붕은 육지의 해저로의 자연적 연장”이라고 판시함.
- 이에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1970년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령에 대륙붕 광구를 설정함. 아래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이어도는 제4광구에 포함됨.

<그림 2> 국내 대륙붕 탐사 현황(2011년 12월 기준)



* 출처: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http://www.knoc.co.kr/sub03_1_2.jsp)

이어도 문제는 유전 등 해저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은 대륙붕과 EEZ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한국이 이어도에**해양과학기지를****건설하기 위한 공사를****벌이기 시작한****2000년에 중국****외교부의 친강(秦剛)****대변인은 “EEZ가****중첩되는 해역에서****한국이 일방적으로****개발 활동을 하는 것에****반대하다”며****명시적으로 이익을****제기**

- 에머리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들이 동아시아 대륙붕의 유전 개발에 적극 나서자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선 일찍부터 대륙붕을 둘러싼 관심과 갈등이 짙음.

○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벌이기 시작한 2000년과 2002년에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은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개발 활동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명시적으로 이익을 제기함.

○ 동중국해는 수심이 얇은 대륙붕으로 이뤄져 있어 중국 칭다오(靑島)의 북해 함대나 상하이 동해 함대의 경우 이어도 해역을 거치지 않고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워 이어도는 군사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김영구, 2008).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최근에 발생함.

- 2012년 3월 24일, 우리 해군은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으로부터 잠수함으로 보이는 수상한 물체가 이어도 서북쪽 40마일 해역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고를 받고 3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두 척을 급파했지만, 이미 사라져 버려 접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짐. 군 관계자는 “당시 이 해역에 우리 군 잠수함은 없었으며 중국 해군 잠수함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이어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군 동해 함대 소속으로 보고 있으며, 수면으로 떠오른 점으로 미뤄 디젤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함. 그 이튿날 새벽에도 잠수함이 목격됐던 해상 인근에 또다시 중국 해군 호위함 두 척이 나타났음.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 군함이 다가가자 우리 측 EEZ 바로 앞에서 급선회해 돌아갔다”고 말함(JTBC 뉴스, 2012년 4월 13일자).

나. 이어도 문제의 경과 및 파장

○ 한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나서자 중국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도 부근을 집중 탐사, 그 북동쪽 4.5km 수역에서 길이 372m, 폭 169m의 산 모양 수중 암초를 발견하고 ‘딩옌(丁岩)’이란 중국식 이름을 붙임.

- 이 사실이 2006년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탐사선을 보내 이 암초를 정밀 조사한 뒤 ‘파랑초’라는 한국식 이름을 붙임. 이처럼 이어도 인근 수역의 관할을 둘러싼 한중 간 줄다리기는 심화돼 옴.

- 중국은 2005년 이어도 부근 상공에서 5회 이상 순회 감시 비행을 함. 이에 대해 중국 국가해양국은 「해양행정집법공보(海洋行政執法公報)」를 통해, 중국의 해양권 수호를 위해 유엔해양법협약과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관할 해역에 대한 감독 관리는 물론 이웃 나라와 분쟁이 있는 해역에 대한 순회 감시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함(김영구, 2008).
- 또 2006년 9월 중국 외교부는 “쑤옌자오(蘇暗礁: 이어도의 중국명)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인데다가, 쑤옌자오가 속한 해역이 한중 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이 쑤옌자오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항의함.
- 2006년 11월 타이완 중앙통신(中央通信)과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은 중국 사회과학원 출신 민간 연구원인 왕젠싱(王建興)의 주도로, 이어도로부터의 한국 해양과학기지 철수를 주장하는 민간단체 ‘중화보위소암초협회(中華保衛蘇暗礁協會)’가 만들어졌다고 보도함. 300명 이상이 가입한 이 단체는 ‘보위소암초(保衛蘇暗礁)’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어도에 선박을 보내서 중국령(中國領)이라고 새겨진 동패(銅牌)와 석비(石碑)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힘(김영구, 2008; 정민정, 2012).
- 2007년 12월 중국은 국가해양국 산하기구의 웹사이트인 해양신식망(海洋信息網)을 통해 “쑤옌자오는 동중국해에 발달한 중국 대륙붕의 일부분으로, 중국의 200해리 EEZ 내에 있는 중국영토”라고 주장함. 이 주장이 2010년 8월 뒤늦게 우리나라에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을 빚자 중국은 “쑤옌자오는 어쨌든 한중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귀속 문제는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한발 물러섬.
- 2011년 6월에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남서쪽으로 800m 떨어진 해상에서 좌초한 석탄벌크선 ‘오리엔탈호프’호의 인양작업을 벌이던 한국 선박에 대해 중국은 관공선을 보내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함. 이에 한국 해경은 경비함을 급파해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해 관공선을 돌려보냈음(동아일보, 2011년 7월 27일자).
- 2012년 3월 3일 중국 국가해양국의 류츠구이(劉賜貴) 국장은 관영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 해역에 들

2012년 3월 중국 국가해양국의 류츠구이(劉賜貴) 국장은 관영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 해역에 들어 있다면서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해 정기순찰을 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의 EEZ가 중첩한 곳에 위치한 쑤옌자오의 귀속 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

한국은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중간선 (medium line)'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한국의 EEZ에 속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 이어도가 중국보다 우리 쪽에 훨씬 가까운 만큼 향후 중간선에 따라 해양경계 획정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로 편입될 것은 자명하다고 보

어 있다면서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해 정기순찰을 하겠다고 밝힘. 류츠구이 국장은 정기순찰 해역이 북쪽으로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 남으로는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쩡무안사(曾母暗沙, 제임스 사주)에 이른다면서, 이어도와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중사군도(中沙群島)의 황옌자오(黃暗礁), 난사군도의 제도가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들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쑤옌자오를 영토로 여기지 않으므로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의 EEZ가 중첩한 곳에 위치한 쑤옌자오의 귀속 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함(연합뉴스, 2012년 3월 10일자; 3월 12일자).

3. 이어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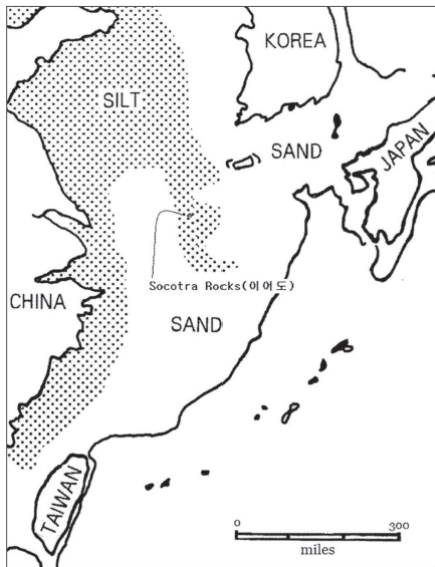
가. 한중 양국의 기본 입장

- 한국은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중간선(median line)’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한국의 EEZ에 속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함.
 -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그동안 10여 차례 협상을 벌여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어도가 중국보다 우리 쪽에 훨씬 가까운 만큼 향후 중간선에 따라 해양경계 획정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로 편입될 것은 자명하다고 보고 있음.
- 우리나라가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등거리(equidistance) 및 중간선 원칙에 충실한 모습은 1996년 제정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잘 반영돼 있음.
 - 즉,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함.
- 중국은 자국의 육지영토가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상에 이어도가 위

치해 있다고 주장함. 게다가 중국은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을 내세워, 해양경계 획정 시 해안선의 길이와 국토면적, 인구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럴 경우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관할 수역에 포함된다는 것임.

- 중국은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의 상당 부분이 중국 내륙에서 흘러나와 퇴적된 실트(silt: 모래보다 잘지만 진흙보다 굵은 침적토)층이라면서 한중 EEZ 경계를 이 ‘실트라인(silt line)’으로 획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한국 측 제4광구와 제7광구 일부가 중국 측에 포함되게 돼, 아래 <그림 3>에서 보듯이 중국의 실트라인 내에 속하는 이어도의 한국 관할은 부정될 것임(이어도연구회, 2011).

<그림 3> 실트라인과 이어도



* 출처: 김영구(1999),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p.549.

- 중국은 한중 간의 해양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한국이 지질학적·지형학적 기준을 무시하고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매우 비판적임. 중국은 육지영토의 자연 연장 원칙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음.
-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1998년에 제정한 국내법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반영해, 대륙붕의 자연 연장을 강조하고, EEZ와 대륙붕의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형평의 원칙을 명시함. 즉, 중국은 해저지형을 고려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중간선 원칙보다 형평의 원칙이 자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임.

중국은 자국의 육지영토가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상에 이어도가 위치에 있다고 주장... 게다가 중국은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을 내세워, 해양경계 획정 시 해안선의 길이와 국토면적, 인구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럴 경우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관할 수역에 포함된다는 것

400해리 이상 되는
곳이 거의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좁은 동중국해는
한·중·일 3국의
EEZ와 대륙붕이
중첩되는 수역...
따라서 한중 간 이어도
문제는 국제해양법적
쟁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실정

나. 국제법적 쟁점

- 400해리 이상 되는 곳이 거의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좁은 동중국해는 한·중·일 3국의 EEZ와 대륙붕이 중첩되는 수역임. 따라서 한중 간 이어도 문제는 국제해양법적 쟁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실정임.
- EEZ와 대륙붕의 양 제도는 200해리의 범위 내에서 중복되고 해당 관할권의 내용도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권원이나 성립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유엔해양법협약에는 별도로 규정돼 있고, 둘 사이의 관계도 여러 가지로 불명확한 점이 있음.
 - EEZ는 거리 개념이 중시되는 제도여서 대륙붕에 비해 비교적 경계 획정이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부수역뿐만 아니라 해저와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연안국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 더구나 기존의 대륙붕 경계획정과 중복이 되는 경우, 양자의 조정 문제가 쉽지 않아 EEZ와 대륙붕에 대한 ‘별도의 경계획정(dual boundary delimitation)’ 또는 ‘단일 경계획정(single boundary delimitation)’의 적용 문제가 제기됨.
 - 향후 한중 간에 중간선에 따라 해양경계 획정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어도는 한국의 EEZ 내로 편입될 것은 분명함. 하지만 제주도 남부의 대륙붕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구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규정된 200해리 범위를 초과하는 광역 대륙붕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으로서는 육지의 자연 연장 원칙을 적용해 별도로 교섭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이창위, 2009).
- 중국은 등거리선-특별상황 규칙이 반영된 대륙붕협약 등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4개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 지형적으로 대륙에서 바다로 뻗은 대륙붕⁶⁾이 매우 잘 발달돼 있는 중국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진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기간 동안에는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대륙붕의 자연 연장 원칙을 적극 주장함.
 -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을 보이면서 뚜렷한 쟁점을 낳고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경계획정에 관한 제74조 제1항과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제83조 제1항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돼 있음. 즉,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대륙붕)의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해양경계 획정 규정에 대한 교섭과정에서 중간선이나 등거리선을 일반원칙으로 하되 관련 상황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 ‘등거리선 그룹’ 국가들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 ‘형평원칙 그룹’ 국가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끝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그대로 덮어둔 미봉의 결과임(이석용, 2009).
- 이에 따라 ‘공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을 목표로 하면서도 중간선에 대한 언급 없이 그 의미가 모호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경계획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논란의 불씨를 안게 됨. 이것이 이어도 문제에도 그대로 올라와 한중 간의 갈등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유엔해양법협약 상 이러한 경계획정 규정의 불명확성은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에게 매우 폭넓은 재량을 허용하는 셈이어서 국제 판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다. 국제 판례의 추세

- 국제사법재판소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과 형평의 원칙을 제시함.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이란 기본적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대륙붕 경계획정은 각국에게 가능한 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 부분 전체를 주도록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함.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표명한 자연적 연장론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
- 이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경계 획정 시 1958년 대륙붕 협약이 규정한 등거리선 방법의 사용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단일의 대륙붕 경계획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음.
- 이 사건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서는 △ 당사국 해안의 일반적인 형상, △ 관련 대륙붕 지역의 물리적·지질학적 구조와 천연자원의 존재, △ 경계획정 결과 각 연안국에게 귀속되는 대륙붕의 면적과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따라 측정된 해안선 길이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을 목표로 하면서도 중간선에 대한 언급 없이 그 의미가 모호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경계획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논란의 불씨를 안아... 이러한 경계획정 규정의 불명확성은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에게 매우 폭넓은 재량을 허용하는 셈

**최근 국제 판례는,
동질적인 공유
대륙붕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해저의 지질학적
요소와 지구물리학적·
지형학적 특징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현저해 저... 폭이
400해리 미만인
해역에서는 단일
경계선인 잠정 중간선을
획정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통합돼 가는
추세**

- 국제사법재판소는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과는 달리,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자연 연장 원칙을 배제함.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에 맞는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양국 간 수역에 중간선을 먼저 긋고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택함. 국제사법재판소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는 대륙붕의 경계는 자연적 연장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해저의 물리적 성격에 관계없이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함.
 - 리비아는 자국과 몰타 간 대륙붕 경계선은 ‘단층지대(rift zone)’라 부르는 근본적 단절을 따라 획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리비아의 이러한 단층지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리비아는 배후지가 국가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보다 광대한 영토는 대륙붕 경계 획정시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관행, 학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과정에 비취볼 때, 해안의 배후지를 대륙붕에 대한 권리창출을 위한 기초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함(이석용, 2009).
- 최근 국제 판례는, 동질적인 공유 대륙붕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해저의 지질학적 요소와 지구물리학적·지형학적 특징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현저해 지고 있음. 즉, 자연 연장 원칙이 주목받지 못함.
 - 폭이 400해리 미만인 해역에서는 단일 경계선인 잠정 중간선을 획정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통합돼 가는 추세를 보임(이어도연구회, 2011).
- 국제해양법재판소⁸⁾는 2012년 3월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뱅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 획정 사건 판결에서 이러한 잠정 중간선 원칙을 재확인함. 이에 따라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례가 추가된 셈임.
 - 인도양 북동부에 위치한 뱅골만 해역은 해저유전 개발을 두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에 분쟁이 격화돼 옴. 2009년 10월 방글라데시가 먼저 중재법원에 제소하자, 미얀마는 이 사건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했고, 방글라데시도 이를 수락함으로써 같은 해 12월 재판절차가 개시됨.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 사건 판결에서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으로부터 잠정적 등거리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과 같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 내세우고 있는 중간선 원칙과 일치함.
- 중국은 해양경계 획정 시 육지의 자연 연장 원칙 외에도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음.
- 이번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면, 한중 해양경계 획정에서는 연안으로부터 잠정적 중간선을 그은 후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게 될 것임. 한국과 마주하는 중국 연안은 오목한 지형이 아니며, 또 서해와 동중국해가 중국 본토에서 기인한 퇴적층이라는 지형적 요소도 고려될 수 없어, 결국 중간선이 양국의 경계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됨(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2년 3월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 획정 사건
판결에서 잠정 중간선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례가 추가된
셈... 중국은 해양경계
획정 시 육지의
자연 연장 원칙 외에도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4. 이어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가. 역사적·실화적 통합 인식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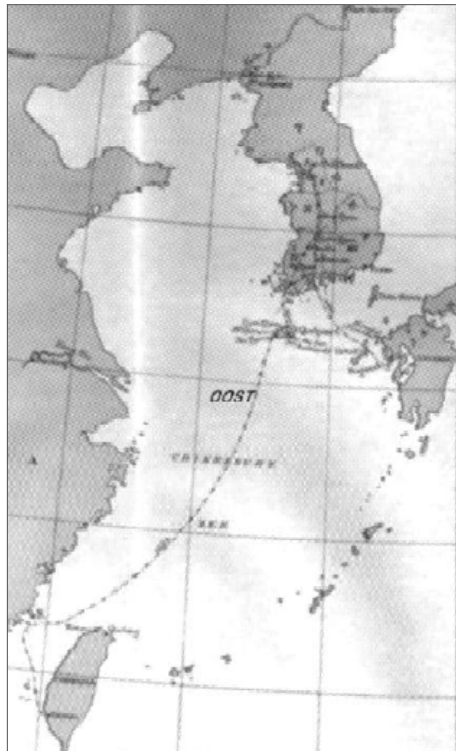
-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 인식이 자국보다 100년 늦다고 주장함. 그 주장의 근거로 1880년~90년대 청말(清末)에 북양수사(北洋水師)의 해도에 쑤옌자오가 표기돼 있다는 것임. 하지만, 중국은 이 해도를 제시하지 못함.
- 중국이 이어도를 ‘쑤옌자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2006년 9월 14일로, 이날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이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해 법적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중국식 명칭을 들고 나온 것임.
 - 쑤옌자오는 Socotra Rock(소코트라礁)에서 차음한 蘇(쑤)에다 暗礁(엔자오)를 붙여 합성한 것으로 보임.
 - 이어도에 대한 자국 관할을 주장하는 중국 민간단체의 주도자는 ‘蘇暗礁 Blog’를 통해 자신들의 가장 오래된 고서 가운데 하나인 『산해경(山海經)』의 대황동경(大荒東經) 29편에 나오는 ‘소문(蘇門)’을 ‘소산(蘇山)’으로 글자를 바꿔 쑤옌자오의 연원으로 날조하려고 하기까지 함.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이어도 관할권 분쟁이 확산될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지만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음(이어도 연구회, 2011).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는
이어도가 표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해역의 항해도가
1633년 8월 16일
제주도에 표착했던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
(Hendric Hamel)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최근
밝혀내... 17세기 중엽에
이미 동아시아 해역을
항해하는 이들에게
제주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어도라 부르는
거대한 수중 암초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

-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회장 고충석)」는 이어도가 표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해역의 항해도가 1633년 8월 16일 제주도에 표착했던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Hendric Hamel)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최근 밝혀냄.
 - 하멜 표류기와 관련한 웹사이트를 개설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헨니 사브나이에(Henny Savenij) 본 『하멜표류기』에 따르면, 하멜 일행은 출항하자마자 대만해협을 방황하다가 태풍에 밀려 이어도 해역을 흐르는 해류를 타고 제주섬 서쪽 용머리해안(현재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아래 바닷가) 모래밭에 표착한 것으로 보임.
 - 아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어도로 추정되는 곳이 ‘OOST’라고 표기돼 있음. 그 위치 및 명칭에 대해서는 지리학자가 앞으로 규명할 과제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위치가 현재의 이어도와 일치함. 이어도 외에는 이 해역에 섬이나 수중 암초가 없기 때문임 (이어도연구회, 2011).

<그림 4> 하멜의 동아시아 해역 항해도



* 출처: 헨니 사브나이에(Henny Savenij)
(<http://www.hendric-hamel.henny-savenij.pe.kr>)

- 하멜 일행은 제주도에 상륙하자마자 자신들의 위치를 측량함. 그 결과, 위도 33도 32부로 켈파트(Quelpaert), 즉 조선사람(Coreesen)이 제주(Scheluo)라고 부르는 섬이 틀림없다고 하멜표류기에 기록함. 하멜의 이 항해도는 17세기 중엽에 이미 동아시아 해역을 항해하는 이들에게 제주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어도라 부르는 거대한 수중 암초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함.
- 제주에서 전승돼온 설화나 민요 등을 보면, 이어도는 옛날부터 해양 활동을 해온 제주인들에게는 풍성한 어장이자 중국·일본 등 외부세계로 나가는 해로임을 알 수 있음. 동시에, 이어도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달픈 삶을 영위해야 했던 제주 사람들이 상상해온 풍요의 섬으로서 이상향이었음.
- 상상력 연구의 대가인 바슐라르(1993)에 따르면, 상상력도 발동하려면 모종의 물질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함. ‘날개 달린 사자’를 상상하기 위해 현실의 박쥐가 있어야 하듯이, 이상향인 이어도를 상상하도록 자극한 현실의 뭔가가 있어야 함. 상상속의 ‘날개 달린 사자’에 비해 현실의 박쥐가 볼품없듯이, 풍요의 섬을 꿈꾸게 한 그 무엇도 보잘 것 없는 수중 암초일 수 있음.
- 제주 민요인 해녀노래에 “강남(江南: 중국 양쯔강 남쪽지역)을 가건 해남(海南)을 보라/ 이어도가 반(半)이엿 한다”는 가사가 있음. 이 해녀노래 가사는 중국으로 가는 해로의 절반가량 되는 곳에 이어도가 있음을 알려줌.
-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그 ‘여(파도가 들고 남에 따라 숨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수중 암초를 제주사람들은 ‘여’라고 부름)’야말로 모든 조건을 제대로 갖춰 이어도를 상상케 한 ‘현실의 물질적 근거’임에 틀림없음(송상일, 2008).
- 제주섬에서는 이처럼 이어도가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호흡을 함께 해 오면서 오늘날 ‘뿌리 깊은 생활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음. 따라서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논리 개발뿐만 아니라, 제주의 역사·설화·민요 등을 포함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의 융합 내지 통섭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의 제고가 요청된다고 하겠음.

*제주섬에는 이어도가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의 일상 속에
‘뿌리 깊은 생활문화’로서
자리 잡아...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논리
개발뿐만 아니라,
제주의 역사·설화·
민요 등을 포함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의
융합 내지 통섭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의 제고가 요청돼*

**해양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연구성과를 제휴한다면
국제사회에 이어도에
대한 평화적인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특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생산되는 관측 자료들이
한·중·일 간의
국제적 공유 및 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

나.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이용 확대

-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관리를 강화하면서,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는 게 바람직함.
 - 2003년 6월에 준공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5항에 의거, 기지를 중심으로 주변 500m를 안전수역으로 설정해 공시함으로써 항해와 구조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최첨단 해양·기상·환경 관측체계를 갖추고 해양 및 기상 예보, 어장 예보는 물론, 해상교통 안전, 연안 재해 방지와 함께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문제의 예측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해양과학기지임.⁹⁾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서면서 지상의 관측망이나 위성자료로는 얻기 힘들었던 해상의 다양한 관측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한반도에 내습하는 태풍의 특성을 연구하고 예측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함. 특히 이어도 기지는 쿠로시오 난류와 서해 저층냉수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의 강도를 결정하는 해양의 수온 변동을 모니터링하기에 매우 유리함.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상현상의 정확한 예측과 분석은 필수적임.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으로 대표되는 수온변화에 의한 지구환경 변화는 세계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수온에 대한 연구는 갈수록 중요해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이에 대한 관측과 연구를 기본적으로 수행함.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동중국해 중앙에 관측점을 확보함으로써 황사, 오염물질, 에어로졸과 같은 대기물질의 이동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가 가능함.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인류의 화석연료 과다 사용으로 대기의 탄소가스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기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지구환경 변화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을 수행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이어도연구회, 2011).
- 해양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연구성과를 제휴한다면 국제사회에 이어도에 대한 평화적인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임. 따라서 한중 EEZ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제적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 요청됨. 특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에서 생산되는 관측 자료들이 한·중·일 간의 국제적 공유 및 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함.

다. 외교적·사법적 해결방안의 모색

- 한중 양국은 이어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함. 다양한 협상 채널을 총동원해 이견을 좁히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임.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문제가 극심한 갈등과 분쟁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사법적 해결방안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4조에서,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에 입각해서 합의에 의해 경계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그리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정하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고, 합의까지의 과도기에는 실질적 성격의 잠정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어도의 자국 관할을 외치는 중국 민간단체의 주장이 중국사회에 확산돼 설득력을 얻을 경우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항의 표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중 양국 정부가 민족주의적 정서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지 못할 경우, 이어도 현장에서 중국 민간단체의 저항도 도발과 함께 한중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당분간은 우리 정부의 매뉴얼대로의 법집행이 가능할지 모름. 즉,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중국이 비군사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회항 요구, 경고 방송으로 되겨시키고, 시설물 훼손 등의 실력행사가 구체화될 때에는 처벌을 위한 나포 등의 강력한 법집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민간단체의 예상 행동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대응방안의 근거 법률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임. 이는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SUA협약 추가의정서)의 국내이행 법률임(정민정, 2012).
 - 이 법의 제7조는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운

한중 양국은 이어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다양한 협상 채널을 총동원해 이견을 좁히는 데에 힘써야...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문제가 극심한 갈등과 분쟁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사법적 해결방안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 있어

**국제재판에는 장점과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재판이
'좋다', '나쁘다'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국제적
추세와 함께 재판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대해
보다 정교한 입장을
세울 필요 있어**

항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그 안전을 위협하게 할만한 손상을 입힌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게 돼 있음.

- 이러한 실력행사가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강력한 법집행이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음. 그렇다고 이어도 문제를 놓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함.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3자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음.
 - 이럴 경우 한중 양국 정부가 이어도 문제를 평화적·중국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회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함(정민정, 2012).
- 우리나라는 해양경계 획정 분쟁과 관련해서 2006년 4월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한 바 있음(김현수, 2010).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해양경계 획정 분쟁과 관련한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했음. 그러나 한중 양국이 모두 동의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게 됨.
- 재판에 따르는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됨. 재판은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가르기 때문에 단 1%의 패배 위험도 부담할 수 없는 '사활적 국가이익'이 걸린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하기 어려움.
 - 국제재판에는 장점과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재판이 '좋다', '나쁘다'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 국제법의 지배라는 이상론에 끌려 재판 만능주의로 가는 것도 어리석지만 습관적으로 재판을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국제적 추세와 함께 재판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대해 보다 정교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음(백진현, 2009).
 - 아울러 우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의 사법제도나 관행의 연구는 물론 국제사법 제도에 있어서의 적용법규나 적용원칙 그리고 사법절차 등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해양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법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게 바람직함.

기획 및 감수: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진행남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경희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 취득했음.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남북관계, 동아시아 다자협력(제주프로세스), 한류와 문화공동체 등임. 최근 연구로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북한의 한류현상과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방송매체의 영향” 등이 있음.

주석

- 1)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수역임. 연안국이 이 수역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에 관하여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제3국은 항해 및 상공비행의 자유와 해저 케이블 설치 등의 자유가 보장됨. 실제로 EEZ의 폭은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수역의 범위가 됨. 즉,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EEZ 외측 한계를 설정하는 통상의 경우, 12해리의 영해를 제외한 188해리가 정확한 EEZ의 폭임. 따라서 EEZ의 내측 한계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이 됨(이창위, 20009).
- 2) 1951년 미국이 제시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중 이어도와 관련하여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자 이승만 정부는 이어도의 실제 확인을 위한 작업을 실시함. 1951년 해군 함정을 동원한 한국산악회와 해군의 이어도 탐사가 이뤄짐.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육당 최남선이 제기한 ‘파랑섬 실재론’을 받아들여 부산 피난정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함. 공동 탐사팀은 ‘Socotra Rock’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수면 아래 암초에 가라 앉힘.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에 의한 평화선 내에 이어도가 포함되어 한국의 해양 관할에 속하도록 하였음(이어도연구회, 2011, p.197).
- 3) 대륙붕이 처음 국제법적인 제도로 등장하여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에는 지질학에서의 정의와 유사한 부분이 많았지만,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륙붕의 범위는 지질학적인 대륙붕을 넘어서 대륙변계로 확대되었음. 지질학에서는 해안에서 수심 200m에 이르는 지점까지의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부분을 대륙붕(continental shelf)이라 하고, 대륙붕을 지나 수심 1,200m에서 3,500m에 이르는 보다 경사가 급한 부분은 대륙사면(continental slope)이라 하며, 수심 3,500m에서 4,000m에 이르는 퇴적층으로 구성돼 있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대륙대(continental rise)라고 함. 그리고 대륙붕과 대륙사면, 대륙대를 합쳐서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라고 부름(이석용, 2009).
- 4)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은 주권(sovereignty)이라 명기돼 있는데 반하여, 대륙붕과 EEZ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은 주권적 권한(sovrenign right)이라고 돼 있음. 국제법 학계에서는 이 주권적 권한을 일반적으로 관할권(jurisdiction)이라고 부름. 대륙붕과 EEZ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주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한 또는 관할권이라 부르는 것은 이들 경제적 관할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은 당해 수역의 자원에 대한 관할권일 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이석용, 2009).
- 5) ESCAFE는 1974년에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6) 발해만과 서해는 전체가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00m 수심을 기준으로 할 때 대륙붕의 면적은 각각 83,000km²와 404,000km²에 달함. 동중국해에서는 그 대부분인 1,059,000km²가, 남중국해의 경우에는 728,000km²가 지질학상의 대륙붕에 속함(이석용, 2009).
- 7)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 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 8)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설립된, 해양법에 관한 독립적인 사법기구로서 1996년에 출범함.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주된 목적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것임. 고 박춘호 교수가 초대 재판관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3월 김두영 사무차장이 재선에 성공함(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 9) 이에도 해양과학기지의 플랫폼의 상부구조는 약 400평 규모로 1층 하부 데크(cellar deck)에는 기계장비 및 디젤 발전기, 모노레일 오페수 처리시설, 화재 진압시설, 담수기 등이 설비되어 있으며, 2층 주 데크(main deck)에는 침실, 화장실, 회의실, 주방, 실험실, 스위치기어룸, 배터리실이 있음. 3층 지붕 데크(roof deck)에는 등주설비, 풍력발전기, 통신 및 관측시설, 해수 및 담수 탱크시설, 공조기(Hvac), 안개경보기 등이, 4층에는 피난 구조 및 비상시 인원 동원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heliport)이 갖춰져 있음(이에도연구회, 2011).

참고문헌

- 구민교(2011), “지속가능한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의 모색: 우리나라의 해양정책과 그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0권 2호(2011 여름), pp.1-36.
- 김부찬(2007),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강창일 국회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2007.1.25) 발표논문.
- 김영구(2008),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동북아역사재단.
- 김영구(1999),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부산: 효성출판사.
- 김현수(2010), “분쟁의 해결,”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III』, 국제해양법학회, 서울: 지인북스, pp.85-124.
- 동아일보, 2011년 7월 27일자.
- 바슐라르(1993), 『공기와 꿈』, 정영란 역, 서울: 민음사.
- 박찬호(2011), 『국제해양법』 제2판, 서울: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 백진현(2009),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재판의 역할,” 『Dokdo Research Journal』 2009. Autumn, vol 7, pp.6-10.
- 송상일(2008), “이어도를 찾아서,” 시리즈 「송상일의 세상읽기」, 한라일보(2008. 8.13~8.27).
- 연합뉴스, 2012년 3월 10일자; 3월 12일자.
- 이어도연구회(2011), 『이어도 바로알기』,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이석용(2009), “대륙붕,”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I』,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서울: 지인북스, pp.281-347.
- 이창위(2009), “배타적 경제수역,”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I』,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서울: 지인북스, pp.207-280.
- 정민정(2012), “한·중간 이어도 문제의 해결방안,” 『이슈와 논점』 제405호(2012. 3.13), 국회 입법조사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이어도 해양경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국제해양법재판소, 벵골만 사건에서 해양경계 중간선 원칙 재확인,” 보도자료(2012.4.17).
- JTBC 뉴스, 2012년 4월 1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